

Q & A

Q 기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증축·대수선·용도변경인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나요?

A 증축·대수선·용도변경인 경우에도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일 경우에는 기존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합니다.

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타 건설안전관리자(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업무, 시공업무 등)와 겸직이 가능한가요?

A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고,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수행에 문제없다면 「화재예방법」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.

Q 법 시행 후 “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”에 따른 적용시점 기준은?

A 「화재예방법」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적용기준은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건축허가 신청일(신고일)부터 적용합니다.

한국소방안전원 시도지부 안내

지부명	주소	전화번호
서울지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(영등포동8가 87-4) 2층	02)2671-9076~8
서울동부지부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47 한국도자기 서울사옥(신설동 100-29) 7층	02)3298 - 6951
부산지부	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8번길 53-12(금사동 80-1)	051)553 - 8423~5
대구·경북지부	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(삼덕동2가 210-1)진석타워 4층	053)429 - 6911, 7911
인천지부	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01 (공촌동 305-5)	032)569 - 1971~2
광주·전남지부	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71번길 112(우산동 1608-2)	062)942 - 6679~81
대전·충남지부	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18 (중리동 231-2)	042)638 - 4119, 7119
울산지부	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97 울산상공회의소 6층(신정3동 589-1)	052)256 - 9011~2
경기지부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19 (화서1동 60-4)	031)257 - 0131~3
경기북부지부	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1 시티타워프라자 9층(동패동 1759-6)	031)945 - 3118, 4118
강원지부	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45 (읍하리 231-8)	033)345 - 2119, 2120
충북지부	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502번길 5(성화동 225-12)	043)237 - 3119, 4119
전북지부	전라북도 완주군 자사제로 59 (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874-1)	063)212 - 8315~6
경남지부	경상남도 창원시 상산구 충훈로 91 창원문성대학 6호관 1층(두대동 196)	055)237 - 2071~3
제주지부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69, 센트럴타워 3층(이도이동)	064)758 - 8047 064)755 - 1193



한눈에 알아보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
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선임대상 : '22.12.1. 이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·대수선을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

- ① 연면적 15,000㎡ 이상인 것
- ②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
- ③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
- ④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, 냉장창고, 냉동·냉장창고

선임주체 : 공사시공자 *

*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

선임기간 : 건설 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

선임신고 : '22.12.1. 이후 부터 선임하며,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

처벌기준 :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

- (벌금)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(300만원 이하의 벌금)
- (과태료)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(2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안내

① 자격증

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

+

② 수료증
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

2가지 모두 충족해야 선임 가능

(① 자격증 또는 ② 수료증 1가지로는 선임불가)

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

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필수 보유
(특급·1급·2급·3급 중 어느 하나)

②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

교육기관 : 한국소방안전원

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: 24시간(3일)

소방관계법령

건설현장 관련 법령

건설현장 화재일반

건설현장 위험물·전기·가스 안전관리

임시소방시설의 구조·점검·실습·평가

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·관리

건설현장 소방계획 이론·실습·평가

초기대응체계 구성·운영 이론·실습·평가

건설현장 피난계획 수립

건설현장 작업자 교육훈련 이론·실습·평가

응급처치 이론·실습·평가
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



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경우

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

(특급~3급)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후 시험 합격


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


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

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경우

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* 발급

'22. 12. 1. 이후 발급 가능(한국소방안전원)


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


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



*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종류

1. 특급·1급·2급·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
2. 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설비(산업)기사, 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기사, 위험물기능사
 - ▶ 해당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발급 필요 (발급기관: 한국소방안전원)